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정 2011. 3. 1.
개정 2011. 8. 1.
2012. 3. 1.
2012. 9. 1.
2013. 1. 1.
2013. 9. 1.
2013. 11. 5.
2014. 2. 1.
2014. 3. 1.
2014. 11. 5.
개정 2015. 3. 1.
2015. 9. 1.
2016. 1. 1.
2016. 3. 1.
2016. 12. 1.
2017. 3. 1.
2017. 9. 1.
2018. 1. 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와 본교 학칙 제2조의2, 대학원 학칙 제4조의2(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1, 16. 1. 1)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재교육형)으로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학부(전공)를 말한다.(개정 2012. 3. 1)

제 3 조(계약주체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3. 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개정 2012. 3. 1)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3. 1)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신설 2012. 3. 1)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신설 2012. 3. 1)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신설 2012. 3. 1)

(조 개정 2012. 3. 1)

제 4 조(명칭 및 입학정원) ①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채용조건형의 계약학과는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3. 1)

③ 재교육형의 계약학과는 당해 학년의 학생정원은 교육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3. 1)

제 5 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12. 3. 1)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 6 조(설치) ① 계약학과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13.11. 5)

② 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동일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동일 권역으로 간주한다.(신설 2013. 1. 1)

④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폐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신고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 7 조(설치 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9. 1, 16. 1. 1)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기간을 명시한다.(신설 2013. 9. 1)

(조 개정 2016. 1. 1)

제 8 조(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의 계약 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 3. 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필요한 연구・실습 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 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 3. 1, 개정 2013. 9. 1, 16. 1. 1)

③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 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 개정 2016. 1. 1)

제 9 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3. 1)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3. 1, 13. 9. 1)

제 10 조(폐지 등으로 인한 학생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학생의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 3. 1, 16. 1. 1)

③ 제2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6. 1. 1)

제 3 장 학사운영

제 11 조(입학자격)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로 하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개정 2016. 1. 1)

제 12 조(학생의 선발) ①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은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른다.(개정 2012. 3. 1)

②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③ 본교 계약학과의 직전학기 제적생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1개 학기가 경과한 이후에 신・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3. 1)

제 13 조(학기)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개정 2013. 1. 1)

제 14 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수업 및 성적) ①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출석수업의 비중은 5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 3. 1)

② 수업은 학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시설(소유)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제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에 참여한 타기업,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13.11. 5)

③ 학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등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A등급이 1/2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 3. 1, 개정 2014. 3. 1)

④ 성적평가 방법은 시험성적(중간시험, 기말시험 등) 60%, 과제물・출석 등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다음 표에 따라 등급으로 산출하되, 백분율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이한다.(신설 2014. 3. 1)

등 급	평 점	환산점수	분포비율
A+	4.5	95 ~ 100	40% 이하
A^0	4.0	90 ~ 94	
B+	3.5	85 ~ 89	80% 이하
B^0	3.0	80 ~ 84	
C+	2.5	75 ~ 79	20% 이상
C^0	2.0	70 ~ 74	
D+	1.5	65 ~ 69	
D^0	1.0	60 ~ 64	
F	0	0 ~ 59	

⑤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신설 2016. 1. 1)

(조 개정 2012. 3. 1)

제 16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 및 제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개정 2012. 3. 1, 16. 1. 1)

제 17 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 계약학과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의2(산업체 재직 확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민간 산업체의 재직 여부는 반드시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산업체(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

③ 대학에서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 사회보험 가입증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 16. 1. 1)

(조 신설 2013. 1. 1)

제 18 조(졸업학점 및 학위수여) ① 학칙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각 학위과정별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2. 3. 1)

②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전공 48학점/교양 15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 3. 1, 개정 2015. 3. 1)

③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의 설치 운영기간동안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한 학기에 한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신설 2016. 3. 1)

(조 개정 2012. 3. 1)

제 19 조(학사 적용)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3. 1)

제 4 장 계약학과운영위원회

제 20 조(설치)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3. 1)

②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사학위과정을 관장하는 대학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대학위원회”라 한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관장하는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을 각각 설치한다.(신설 2012. 3. 1)

제 21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개정 2012. 3. 1, 16. 1. 1)

② 대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개정 2012. 3. 1, 12. 9.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산학연구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및 해당 학과 교원 1인을 포함한다.(개정 2012. 3. 1, 12. 9. 1, 17. 9. 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신설 2012. 3. 1)

제 22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2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체 등과의 계약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운영경비의 부담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학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24 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6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학칙 및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8. 1, 12. 3. 1, 13. 1. 1, 13.11. 5, 14. 2. 1, 14.11. 5, 15. 3. 1, 15. 9. 1, 16.12. 1, 17. 3. 1, 18. 1. 25)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

<대학>

연도	단과대학명	학과명	형 태	학위명	입학구분	설치·운영기간	정원
2014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4.3.1.~2018.2.28	120
					편입	2014.3.1.~2016.2.29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4.3.1.~2018.2.28	120
					편입	2014.3.1.~2016.2.29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4.3.1.~2018.2.28	400
					편입	2014.3.1.~2016.2.29	
	소 계						640
2015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5.3.1.~2019.2.28	120
					편입	2015.3.1.~2017.2.28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5.3.1.~2019.2.28	120
					편입	2015.3.1.~2017.2.28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5.3.1.~2019.2.28	400
					편입	2015.3.1.~2017.2.28	
	소 계						640
2016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6.3.1.~2020.2.29	120
					편입	2016.3.1.~2018.2.28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6.3.1.~2020.2.29	120
					편입	2016.3.1.~2018.2.28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6.3.1.~2020.2.29	400
					편입	2016.3.1.~2018.2.28	
	소 계						640
2017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편입	2017.3.1.~2019.2.28	120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7.3.1.~2021.2.28	120
					편입	2017.3.1.~2019.2.28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7.3.1.~2021.2.28	400
	예술대학				편입	2017.3.1.~2019.2.28	
	소 계						640
2018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8.3.1.~2022.2.28	120
					편입	2018.3.1.~2020.2.29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8.3.1.~2022.2.28	120
					편입	2018.3.1.~2020.2.29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8.3.1.~2022.2.28	400
	예술대학				편입	2018.3.1.~2020.2.29	
	소 계						640

<대학원>

연도	대학원명	학과명	형 태	학위과정	학위명	설치·운영기간	정원
2015	경영문화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석사	경영학석사	2015.3.1.~2017.2.28	60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박사	경영학박사	2015.3.1.~2018.2.28	40
	소 계						100
2016	경영문화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석사	경영학석사	2016.3.1.~2018.2.28	60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박사	경영학박사	2016.3.1.~2019.2.28	40
	소 계						100
2017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박사	경영학박사	2017.3.1.~2020.2.28	40
	소 계						40
2018	경영문화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석사	경영학석사	2018.3.1.~2020.2.28	60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박사	경영학박사	2018.3.1.~2021.2.28	40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재교육형	박사	문화예술학박사	2018.3.1.~2021.2.28	40
	소 계						140